공공디자인연구센터 운영지침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운영지침은 공공디자인 계획, 공공 서비스디자인 연구, 공공디자인 정책, 공공디자인 문화전략 등 관련 분야의 기초자료 연구 및 디자인 연구·개발과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"공공디자인연구센터" (이하 "센터"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센터는 홍익대학교(이하 "본교" 라 한다) 서울캠퍼스[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(상수동) 홍문관 R926호]에 두며, 산학협력단 부설로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공공디자인에 관한 학문적 연구
2. 공공디자인의 정책 및 전략 연구
3.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 교육 및 세미나
4.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·조사·분석·개발·자문 등 진흥에 관련된 연구 및 사업
5. 기타 본 연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연구와 사업

제2장 임 원

제5조(임원 및 기구) 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소장 1인
2. 운영위원 약간 명
3. 감사 1인
4. 간사 1인
5. 자문위원 약간 명
6. 연구위원 약간 명

②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③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,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간 사업계획
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그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④감사는 센터의 운영 및 회계를 감사한다.

⑤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센터 내의 업무를 처리한다.

⑥자문위원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⑦연구위원은 수석연구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하며, 연구원에 대한 자격 및 처우는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
제6조(임원의 선임 등) ①소장과 감사는 본교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운영위원, 자문위원과 간사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

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중임할 수 있다.

제3장 조 직

제7조(조직)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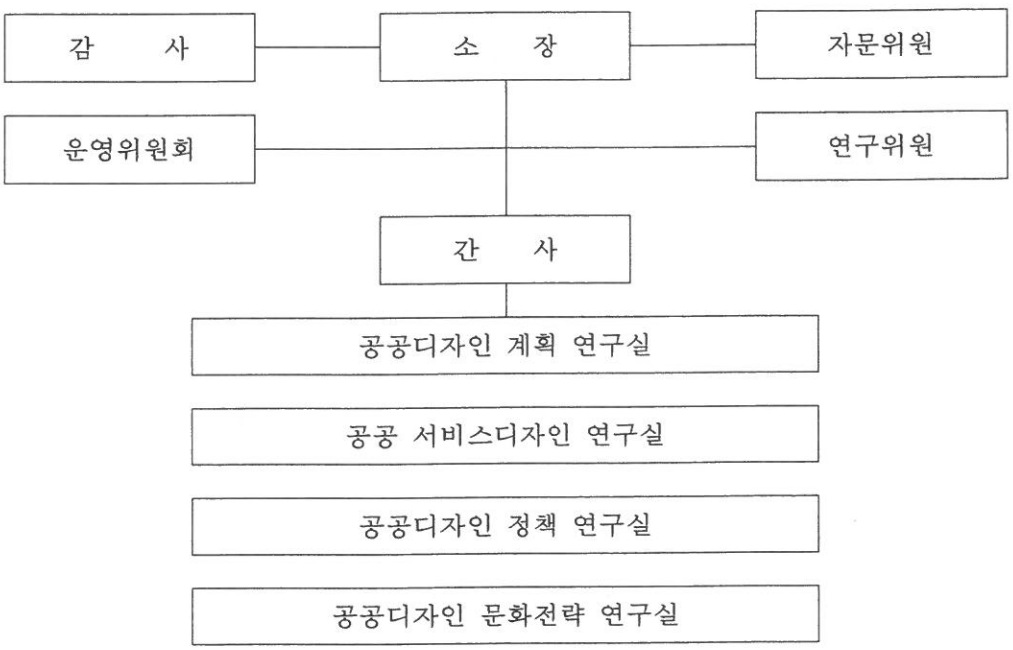

제8조(연구실) 센터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연구실을 둔다.

1. 공공디자인 계획 연구실
2. 공공 서비스디자인 연구실
3. 공공디자인 정책 연구실

4. 공공디자인 문화전략 연구실

제9조(전담인력) 센터에 디자인연구원, 학술연구원, 기능연구원, 및 연구생 및 사업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.

1. 디자인연구원 및 학술연구원은 본교 대학원 해당 전공과정을 수료 또는 재학 중인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
2. 기능연구원은 해당 분야를 전공했거나 해당 분야의 기능을 보유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
3. 연구생은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

제10조(준용규정) 센터의 전담인력의 복무와 처우에 관하여는 본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.

제4장 회 계

제11조(경비) 센터의 경비는 센터 자체의 수입, 산학협력단의 보조금 및 외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.

제12조(예·결산) 매 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은 산학협력단의 예산과 결산 절차를 준용한다.

제5장 기 타

제13조(운영세칙)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운영지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